

재산등록현황 보고서(분기)

(1쪽)

기관명	작성기준일
-----	-------

1. 재산등록의무자 및 등록현황

구분	의무자		등록자		미등록자		미등록 현황				
	전분기	이번분기	전분기	이번분기	전분기	이번분기	계	법정신고 기간 미도래	법정신고 기간 초과	기간 연장	신고 유예
합계	00 (00)										
장관급											
차관											
1급											
2-3급											
4급											

기재 요령

1. 법정신고 기간은 등록기준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입니다.
2. 재산공개 대상자는 ()안에 함께 기재합니다.
3. 의무면제자, 퇴직자, 신고면제자 등은 제외합니다.

210mm×297mm[일반용지 70g/㎡(재활용품)]

2. 재산등록의무자 증감 내용

구분	계	증가 사항(+)			감소 사항(-)			
		신규 등록자	재등록자	전입자	의무 면제자	퇴직자	전출자	신고면제자
등록 의무자								

기재 요령

- 1) 전분기 대비 이번 분기 증감사항을 기재함.
- 2) 재등록자는 전보·강임·강등 또는 퇴직 등에 의하여 3년(퇴직한 경우에는 1년) 이내 다시 등록의무자로 된 사람임(「공직자윤리법」 제5조제1항).
- 3) 등록서류이관자는 등록기관이 변경된 사람으로서 등록서류 모두를 받거나 보낸 사람임.
- 4) 재산공개대상자는 () 안에 함께 기재함.
- 5) 신고면제자는 사망, 구금 등의 사유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사람임.
- 6) 재산등록의무자 변동내용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작성.

210mm×297mm[일반용지 70g/㎡(재활용품)]

< 재산 등록 의무자 변동 내용 >

연번	소속	직위 (직급 등)	성명	신분변동 사유	신분변동 발생일	등록 (이관일)	비고

기재 요령

※ 신규등록자, 재등록자, 등록서류이관자(전입, 전출), 의무면제자, 퇴직자, 승진자(2급→1급, 4급→3급), 사망자의 변동내역을 기재함.

3. 재산변동사항 신고 유예자 현황

구분	계	유예 연수별			유예 사유별			비고
		1년	2년	3년	재외공관, 해외주재 사무소 근무	국외훈련 및 외국파견	휴직	
총 유예자수								
전분기 유예자수								
이번 분기 유예자 수	증가							
	감소							

※ 재산변동사항 신고유예자 내역을 다음 서식에 따라 작성

< 재산변동사항 신고 유예자 변동 내용 >

연번	구분	소속	직위 (직급 등)	성명	유예 사유	발생 및 종료일	유예연도		비고
							년부터	년까지	

기재 요령

- 1) '구분'란에는 유예자의 "증가" 또는 "감소"로 기재
- 2) 발생 및 종료일 : 인사발령일을 기재
- 3) '유예연도'란에는 정기변동신고 및 의무면제자신고의 유예를 받는 연도를 기재
- 4) '비고'란에는 '정기변동' 또는 '의무면제'로 구분하여 기재

4. 정기변동사항 신고현황

구분 직급 등	의무자	신고자	미 신고자 현황						비고
			계	기간 연장	신고 면제자	1·2월 중 최초등록	12월 중 최초 등록	신고 유예	
계									
정무직									
1급									
2-3급									
4급									

기재 요령

- 1) 정기변동사항 신고는 전년도 재산상의 변동사항을 정기적으로 매년 2월 말까지 하는 신고로서 3월 중 재산등록현황 보고 시에만 작성함(「공직자윤리법」 제6조제1항).
- 2) 미신고자현황명단을 별도로 붙임.
- 3) 재산공개대상자는 () 안에, 계약직공무원은 < > 안에 함께 기재함.